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외국어인 ‘인프라’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‘기반시설’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7조의8제1항, 안 제47조의8제2항제3호, 안 제48조의12제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